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3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필요한 상점가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자치법규 수정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범위 산정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 나. 구역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구역내 건축물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호)
- 라. 안 제3조 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3. 4. 13. ~ 5. 3.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6)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 원안의결(2023.05.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
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로,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를 “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책상에 아무런 안은 신청인이 찍지 않습니다. (별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책상에 아무런 안은 신청인이 찍지 않습니다. (별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임종문 (☎ 3153-8582)